

● 제28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지정노력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29.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지정노력 결의안】

의안번호 633

## I. 결의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신원철 의원 등 110명
- 나. 제안일 : 2019. 4. 26.
- 다. 회부일 : 2019. 4. 26.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출범 이후 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지방분권 추진의 선두주자로 2018년 2월 「지방의회법안」의 국회 제출을 비롯해 2019년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반영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를 이뤄냄.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들로 인해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된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와 일탈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정결의안’을 만들어 지방의회 스스로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자 함. 또한 이를 통해 자정노력의 진정성과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시켜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이 송 처 :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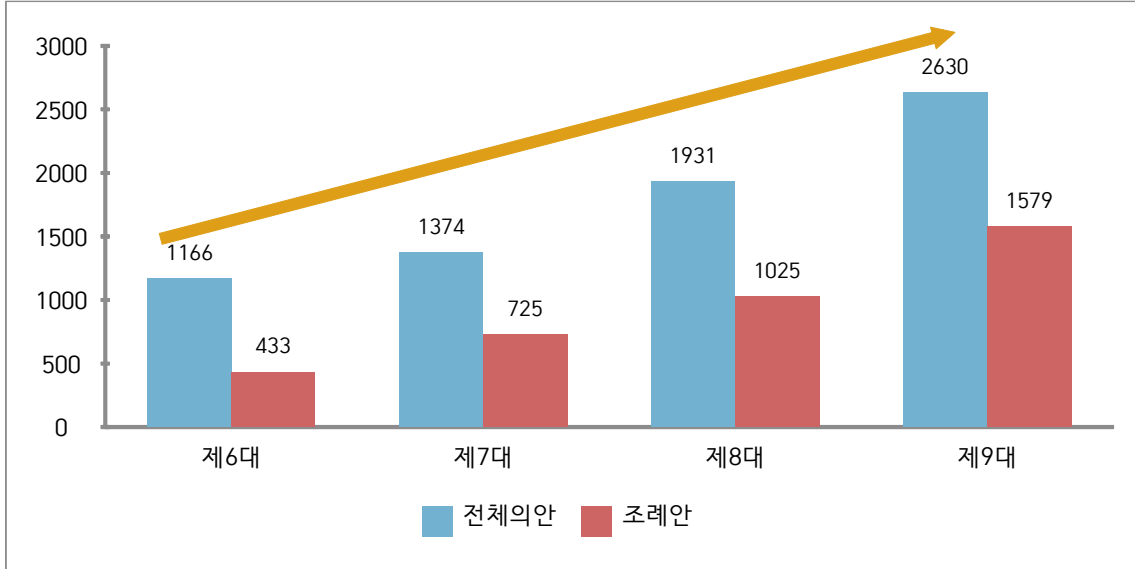
###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무관심 등으로 인해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서울시의회 책임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한 9개 분야 24개의 추진 과제를 담은 「결의안」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그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의회 위상확립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임.

### 2 결의안의 타당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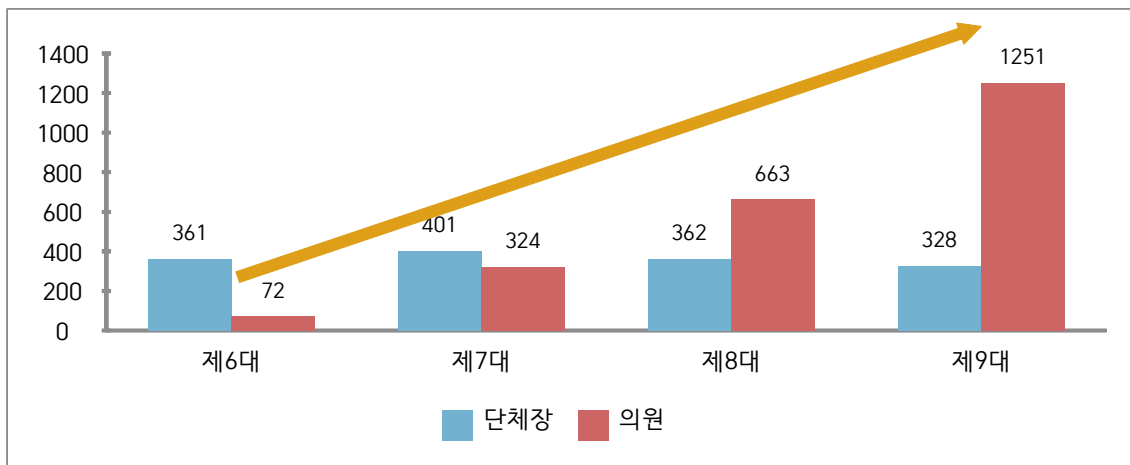
- 지방의회는 헌법상 제도적 보장을 받는 필수기관으로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단체장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감시하고,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행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음.
- 특히 서울시의회는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 그리고 통제·감시기관으로서 자치법규인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 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 실제로 제6대 서울시의회는 총 1,166건의 안건을 접수해 처리했으나, 제9대는 2,630건으로 의회 심의 건수가 약 2.3배로 증가했으며, 조례의 경우에도 433건에서 1,579건으로 약 3.7배 증가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표-1).

<표-1> 제6대~제9대 서울시의회 조례안 등 각종의안 처리 실적



- 자치입법활동의 핵심인 조례안 발의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제6대 의회 의원발의 건수는 72건에 불과했으나 제9대 의회에는 1,251건으로 약 17.4배로 나타나는 등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제8대 의회부터는 단체장(서울시장, 교육감 포함)이 제안한 조례안보다 오히려 의원들의 입법제안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표-2).

<표-2> 제6대~제9대 서울시의회 단체장 및 의원발의 조례안 발의 실적



- 한편,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금년 3월에는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성숙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반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서울시의회는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발맞춰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지방의회법안」 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반영시키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음.
- 또한 서울시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해 의회 개혁특별위원회, 역량강화T/F, 지방분권T/F를 구성·운영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음(표-3).

**<표-3> 제8·9·10대 서울시의회 의회개혁 및 지방분권 추진 내역**

대수	구분	위원 수	활동기간	주요활동내역
제8대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14명	2010.9.10. ~2012.9.9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 시의회 운영관련 및 각종 제도 개선 등
제9대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20명	2014.7.25. ~2015.1.24	조례 제·개정안 발의 18건, 관계기관 건의안 송부 7건, 의회운영 개선 제안 11건 과제 제안
	의회역량 강화T/F	12명	2016.7월 ~12월	의회정체성 확립 34건, 의정활동지원체계 구축 45건,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17건 등 총111건의 과제 제안
	지방분권T/F	14명	2016.10.31 ~2018.6.30	지방의회법 발의,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 등
제10대	의회역량 강화T/F	13명	2018.8월 ~12월	4개 분야 총 23개 과제, 39개 제도개선 방안 제시
	지방분권T/F	17명	2018.8월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대응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 등으로 인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추진

동력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초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시민 신뢰가 크게 실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26일과 4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단체에 「자정결의안」(붙임 참조)을 전달하는 등 시민 신뢰회복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음.
- 이에 본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110명 전체 의원 명의로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실천과 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 지방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이를 계기로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사랑받는 의회,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 3 종합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본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의 책임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의 진정성과 그 의지를 확인하고 책임감 있는 이행을 대내외에 공표함과 동시에,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켜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 시기적으로도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붙임****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

분 야	결 의 내 용
정책지원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 시 의원의 친인척 배제(4촌 이내 금지, 8촌 이내 실명공개)</li> <li>▪ 채용절차 법제화를 통한 공정성 강화</li> <li>▪ 의원 사적업무 지원 금지</li> </ul>
공무 국외연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계획, 심의 결과, 방문결과보고서 등 홈페이지 공개</li> <li>▪ 예산사용내역 공개 및 성과보고회 개최 의무화</li> <li>▪ 시민단체 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한 사전심의·심사 강화, 국외연수 결과 평가</li> <li>▪ 국내연수(간담회, 시찰, 세미나 등) 계획 및 개최결과 공개</li> </ul>
지방의원 겸직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목적의 겸직 제한(소속 상임위 관련 영리목적 겸직 금지)</li> <li>▪ 겸직신고 공개, 겸직신고 위반 및 미신고시 징계 규정 도입</li> </ul>
영리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백지신탁, 이권개입 금지, 취업청탁·인사개입 금지 명문화</li> </ul>
의정비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정비심의위원 등 의정비 결정에 시민단체 참여 강화</li> <li>▪ 의정비 지급기준 공개</li> </ul>
지방의회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률, 조례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 홈페이지 공개</li> </ul>
지방의회 시설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회기 시 회의실 등 시민개방</li> </ul>
윤리특별 위원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 사전교육 강화(인권교육, 청렴교육, 젠더감수성교육 등 교육이수 의무 규정)</li> <li>▪ 윤리특별위원회 기능강화</li> <li>▪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회의공개</li> </ul>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 공약사항 이행계획 및 실적 공개</li> <li>▪ 지방의회 회의 인터넷 공개 및 상임위원회 시민 방청 허용</li> <li>▪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선심성 예산 근절,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li> <li>▪ 의회권한 남용 금지(자료요구 온라인 시스템 도입, 법정 처리기한 준수)</li> <li>▪ 주민감시단 제도화 및 지방의회 공개감사 요청</li> <li>▪ 표결 실명제(안건별 찬반공개)</li> <li>▪ 출판기념회 개최 신고 의무화 및 수익보고(소득신고)</li> </ul>